지정폐기물(폐유, 폐알칼리) 위탁처리 시방서

2021. 12.

SPPC 신평택발전

목 차

1. 일반시방서

2. 계약특수요건

3. 특기시방서

1.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 범위

가. 본 용역의 시방은 특기시방서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에 의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다. 시방서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판단하기 모호하거나 어려운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사전 협의 사항

본 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가. 용역 시행 순서 및 운반 방법, 처리 위치 등

나.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다. 운반용 차량의 진 · 출입과 위치 선정 및 수거 시 차량에 간섭되는 부분

라. 기타 필요한 사항

1.3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법정 유자격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총괄책임자로서 현장을 총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용역 수행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나 통보의 접수, 작업수행, 결과보고, 대관 협의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의 자질이 용역의 효과적 수행에 미달한다고 판단시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발주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원되는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현장에 투입되는 계약 상대의 고용인(인원, 차량, 장비 등)에게 용역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인원, 차량, 장비 등)에게 발주자의 시설물 보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용역 수행 현장에서 기존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명 또는 장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인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법규를 비롯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비산먼지 발생 저감, 폐기물의 흩날림 방지, 침출수 유출 방지 및 냄새 예방을 위한 조치(운반 차량에 설치된 덮개에 추가하여 천막 형태의 덮개 설치)를 시행하여 용역 수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작업 후 잔재 처리 등 뒷정리와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대관 인·허가 및 협의 수행

용역상 필요한 대관 인허가 사항 및 대외적으로 협의 처리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원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 약 특 수 요 건

구 분	내 용	비 고
자격요건	■ 시도지사,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폐기물 처리업체 ■ 사업자 등록업체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인허가증(사본)	계약 전 제출서류
처리기한	■ 작업지시(구두 또는 서면) 후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계약서작성 포함사항	■ 위·수탁자 현황(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계약기간 ■ 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 성상, 취급시 주의사항,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에 관한 필요사항 - 계약(지정)장소 외 운반 처리 금지, 환경유해 요소 방지 등 ■ 종류별 단위, 수량 ■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수집운반, 중간처리 별도 기재 ■ 계약기간 중 처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물 배출자에게 통보 조치 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처리후 송부서류	■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필요시) ■ 작업완료 준공검사 요청서	처리 후 7일 이내 ● 기재내용 - 인수일자 - 인수자, 인계자 날인 - 폐기물 종류 - 차량번호 - 수량
취급처리 방법	■ 성상별 수집·운반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기한 엄수 ■ 환경부 장관이 허가한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 ■ 기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처리방법	

3. 특 기 시 방 서

본 특기시방서는 신평택발전(주)(이하 “발주자” 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업무에 적용하며, 관련법에 의거한 내용 및 기타 필요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자격요건)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요한다.

① 사업자 등록업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한 자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자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중복구성을 금함]

③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자

④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인계서(Allbaro Sysetm)의 사용이 가능한 자

제2조(구비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신청 전 용역감독부서로 사전 제출하여 검토 받고, 입찰참가 신청 시 계약담당부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 및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증 사본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방치 폐기물)처리이행 보증 증명 서류

④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원본

⑤ 기타 서류(현장대리인 자격증빙 서류,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등)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3조(계약물량 및 처리단가)

① 본 계약에 의한 처리단가는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단가로 한다.

② 계약물량은 신평택발전(주)에서 제공하는 예상발생량 자료를 적용한다. 단, 신평택발전(주)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한다.

폐기물 종류	예상발생량 (톤/년)	비고
폐 유(액상)	20	
폐 유(고상)	3	
폐페인트	3	
폐알칼리 (폐암모니아)	60	

③ 상기 예상발생량을 계약물량으로 하되 물량에 대한 보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서 작성시 기재사항)

계약상대자는 신평택발전(주) 사업장 폐기물의 계약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위·수탁 현황(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등 위·수탁 현황내용)

② 위·수탁 기간(계약기간)

③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지정, 일반), 성상, 단위, 수량,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배출자,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위탁계약(운반비, 운반장소 등 명시),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는 처리위탁계약(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비 등 명시)을 각각 체결하되,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간의 3자 계약시에는 운반비와 처리비를 각각 분리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계약서의 위탁처리금액 작성 예시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코드	예상 발생량 (톤)	처리단가(원/톤)			비고
			수집·운반비	처리비	합 계	
폐 유(액상)	06-01-99	20				소각
폐 유(고상)	06-01-99	3				소각
폐페인트	05-01-00	3				소각
폐알칼리 (폐암모니아)	02-02-99	60				소각
합 계		86				

제5조 (업무범위)

본 계약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관장소(처리업체의 인허가증에 명시된 폐기물의 보관장소에 한함)에 반입 후 중간(최종)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6조(작업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발전운영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운반 차량을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내 신평택발전(주) 사업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전운영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휴일 및 공장휴무에 관계없이 발주자가 작업 지시한 처리물량을 발생 당일에 처리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전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성상에 관계없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설비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상차작업 및 계량)

① 상차, 계량, 운반 등의 인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반출량의 확정은 발주자와 합의한 계량대를 사용한다.(외부 계량대를 이용할 경우 국가공인 계량증명업소의 계량대 이용)

③ 계량값은 중량(ton) 단위로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8조(작업 후 송부서류)

계약상대자는 작업 후 아래의 내용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전자인계서 전산입력(Allbaro System)

② 매월 말 월단위로 작업완료 기성(준공)검사요청서

③ 폐기물 처리 작업경로(수집 ˜ 처리)가 기록된 사진대지
(기성(준공)검사요청시 첨부)

④ 폐기물 인계서(2부)

제9조(취급 처리방법)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취급, 처리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집, 운반,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상별로 안전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수집・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을 수 없다.

③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며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반출조건)

①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폐기물의 상차작업 및 발주자의 사업장내 운행 시 전력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의 필요한 조치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특기시방서 제 규정에 위반 또는 태만할 경우 발주자는 제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폐기물의 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운반장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관련법에 허가된 지역 외에는 운반·보관 및 처리를 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허가 외의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제12조(처리결과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시 전 기간에 걸친 처리내용을 증빙자료(처리과정 사진)를 첨부하여 처리실적을 종합 정리하며,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전자인계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반출시 전자정보처리시스템(Allbaro System)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